

# [홍콩] 2016년 12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 주요내용

#### 한국 전라북도산 수입 가금육 및 가금류제품 수입금지(2016.12.5.)

-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에서는 한국당국에서 전라북도에 고병원성 H5N6의 조류독감이 발병했다는 통지를 받아, 12월 5일부로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육 및 가금류제품(달걀포함) 수입금지 조치 실시
- 식품안전센터 대변인은 홍콩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2,400톤의 냉동 가금육 및 176만개의 달걀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전함  
또한, 해당 문제 발생에 대하여 한국 당국과 이미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발송한 해당국가에 대한 조류독감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 중으로 해당지역의 병역이 확산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 출처 : 홍콩 식품안전센터 (2016.12.5.)

#### ○ 참고 웹사이트

- 홍콩 식품 안전센터 보도자료

[http://www.cfs.gov.hk/english/press/20161205\\_0704.html](http://www.cfs.gov.hk/english/press/20161205_0704.html)

#### ○ 시사점

2016년 11월 21일과 25일 각각 한국의 전남산, 충북산 및 경기도산의 수입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 수입 금지에 이은 신규 조치로 금년도 재개된 달걀 등의 수출에 큰 지장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조치 및 보도 자료등을 근거로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한국산 가금육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1. 해외에서 홍콩으로 일괄 수입되기 전 선전 첸하이 보세구에 냉동육 임시보관 조치

#### □ 주요 내용

- 2016년 4월 27일 선전에서 식품환경위생부(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FEHD)와 선전출입검역부(the Shenzhen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Bureau, SZCIQ)는 홍콩에 수입되는 냉동육류/가금류가 홍콩에 일괄적으로 운송되기 전, 선전의 첸하이 보세구(QBPA) 임시보관 허용 합의
- 첸하이에 임시로 보관되었던 냉동 육류가 홍콩으로 들어올 경우, 식품환경위생부장관(Director of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이 발행한 위생증명서가 동반되어야 함. 거래 시 해당 조치를 활용하는 규모는 개별 업체들의 결정에 따르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음
- 업무 협정에 따르면, 첸하이를 통해 환적되는 냉동 육류는 이미 홍콩과 수입 협의가 성립되어 있으면서 중국이 동종의 냉동 육류 수출을 허가한 국가/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 중국 당국은 첸하이 환적 냉동 육류 조사와 검역에 책임이 있으며, 등록된 냉동 창고의 시설과 온도를 점검하여 냉동 육류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해야함

#### □ 세부 준비사항

- 수입 야생육류, 육류, 가금류 및 계란 규정(Imported Game, Meat, Poultry and Eggs Regulations (Cap 132AK))에 따르면, 홍콩에서 육류 및 가금류를 수입하는 자는 DFEH가 검증하고 원산지의 발행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Cap 132AK 상의 환적 육류/가금류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첸하이에서 환적되어 홍콩에 들어온 모든 냉동 육류 화물은 위생증명서와 함께 첸하이 당국에서 발행한 환적증명서를 동반해야 함. 이는 냉동 육류가 첸하이로 적절하게 수입되었고 그 곳에서 저장되는 동안 어떠한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가 없었음을 증명, 또한 첸하이 당국은 홍콩으로 수입되는 환적 냉동 육류의 양과 냉동 창고에 남아있는 양을 조사한 이후, 공제목록 발행해야함

- 수입업체는 FEHD로부터 환적 냉동 육류 각 화물에 대한 수입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QBPA로부터 환적 냉동 육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는 반드시 Man Kam To 통제센터를 거쳐 FEHD직원의 조사를 받은 후 홍콩에 들어가야 한다. FEHD 직원은 수입업체의 냉동 창고에서 수입 냉동 육류 컨테이너를 조사할 수 있고 홍콩으로 수입되는 환적 냉동 육류 각 화물은 이하 수입 관련 서류 필요함

- a) DFEH가 검증한 원산지의 발행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사본)
- b) 첸하이 당국이 발행한 환적증명서(원본)와 공제목록(사본)
- c) FEHD가 발행한 수입라이센스
- d) 선적 청구서
- e) FEHD가 발행한 허가증(해당되는 경우)

- 수입업체들은 냉동 육류 전량이 홍콩에 수입 완료되는 날부터 최소 2개월 간의 위생 증명서와 공제목록 원본을 보관해야 함
- 환적된 냉동 육류는 운송되는 동안 -18°C 이하에서 보관하며 냉동 육류가 홍콩에 도착하면 FEHD는 조사를 위해 냉동 육류 샘플을 채취하거나 보관할 수 있음. 조사 결과 냉동 육류가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FEHD는 냉동 육류를 압수하거나 원산지료로 되돌려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첸하이 당국에도 정보 전달됨

□ 시행일자

- FEHD는 2016년 6월 20일과 23일에 업무 협정과 관련 시행 조치들을 냉동 육류/가금류 수입업체들에게 공지. FEHD와 SZCIQ는 2016년 7월 11일부터 조치 시행 함의 <http://www.cfs.gov.hk/english/import/files/>

2. 유아용 유동식과 유/영아용 포장 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 개정

□ 규정 소개

- 유/영아 보건, 유/영아용 식품 선택 가이드 및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 개정된 식품의약(구성 및 라벨링)규정 (개정 규정)은 영아용 조제 분유의 영양 성분과 영아용 조제분유, 유아용 유동식, 유아와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포장 식품의 영양 라벨링을 규정함

□ 주요 내용

- 영아용 조제분유에 들어가는 25가지 영양소(1+25)의 에너지 값과 내용물의 라벨링을 규정함. 유/영아용 포장 식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1+4) 등 4대 영양소와 비타민 A, 비타민 D에 대한 에너지 값과 내용물의 라벨링 의무
- 유/영아를 위한 의료용 특별 조제분유는 개정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라벨이 붙기 때문에 영양성분과 영양 라벨링 의무에서 제외됨. 또한 기 시행 중인 영양 라벨링 제도(Nutrition Labelling Scheme)에 따라 소포장 상품 역시 영양 라벨링 의무에서 제외됨 (총 250평방 센티미터 미만의 용기로 포장된 유아용 유동식 또는 100 평방 센티미터 미만 면적의 용기로 포장된 유/영아용 포장 식품)
- 개정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최대 \$50,000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함  
[www.cfs.gov.hk/english/press/20160613\\_0549.html](http://www.cfs.gov.hk/english/press/20160613_0549.html)

### III 통관문제사례

---

- 해당사항 없음